

강릉시의회 공고 제2019 - 31호

「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24일

## 강릉시 의 회 의 장

###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강릉시 내 역사·문화·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 걷는 길을 지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: 안 제3조

나. 걷는 길 조성·원칙 및 범위를 규정함 : 안 제4조

다. 종합계획,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: 안 제5조~제6조

라. 명품길 지정·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
: 안 제7조~제8조

마.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: 안 제9조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국, 전문위원, 전화: 640-4033, 팩스: 640-407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역사·문화·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**제3조(책무 등)** ①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(시의 주민을 말한다. 이 조례에서 같다) 및 관광객(이하 “시민 등”이라 한다)에게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모든 시민 등은 자신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등의 체험주체임을 인식하여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스스로 참여하며, 해당 관광자원 등을 보전·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**제4조(조성·원칙 및 범위)** ① 시장은 시민 등의 건강증진과 해당 지역역사·문화·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기회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강릉시 걷는 길을 조성한다.

② 걷는 길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.

1.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성과 심미성의 향상

2. 친환경적 설계 및 배치
3.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존중
4. 시 소재 관련기관·단체 등(이하 “기관·단체 등”이라 한다)과 사전협의

③ 걷는 길의 조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숲길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,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
3. 그 밖에 국가, 강원도 또는 시가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탐방로, 생태탐방로, 탐방로 등으로 지정·조성한 길

④ 시장은 걷는 길을 조성하거나 변경·폐지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, 각종 매체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**제5조(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)**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방향
2. 현황 및 전망
3. 제6조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
4.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원)** ① 시장은 걷는 길의 원활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활성화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망의 체계적 구축·운영. 이 경우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2.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
    - 가.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역사·문화·자연환경 등 관광자원 홍보
    - 나. 올바른 걷기문화 교육
  3.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른 홍보
    - 가. 조성 및 운영상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
    - 나.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
    - 다. 전문가 포럼, 워크숍, 걷기 행사, 주민설명회 개최
  4. 시민 등과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관리
  5. 명품길 지정·운영
  6. 협력체계 구축·운영
  7.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명품길 지정·운영)** ① 시장은 생태·문화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·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걷는 길 중에서 강릉시 명품길(이하 “명품길”이라 한다)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익성, 심미성, 경관성, 역사성,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관·단체 등과 협의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지정된 명품길에는 시민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안내표지를 설치하고, 그 지정배경·가치·의미 등에 관한 설명을 담을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시장은 걷는 길의 효과적 조성 및 운영과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기관·단체 등과 교류·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걷는 길의 관리 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,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제10조(표창)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, 활성화사업 수행, 협력체계 구축·운영 등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전문인력, 관광업자, 기관·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·교부·정산,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,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, 「강릉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조성하거나 지정한 걷는 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